

● 제305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3072)

2022. 2. 10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성배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3072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이성배 의원(찬성24명)
- 나. 제안일 : 2022. 1. 21.
- 다. 회부일 : 2022. 1. 25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임산부의 경우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바, 이에 서울시에서 임산부가 출산 전·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장으로 하여금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3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임산부의 산전·산후우울증 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임산부의 산전·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(안 제4조의3 신설)

-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「모자보건법」제10조의5¹⁾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.
-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출산 지원·장려 방안일 수 있는 바,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동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한편 산전·산후우울증 유병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나, 50-70%의 산모에서 경증의 산후우울감, 8-20% 정도가 산후우울증, 0.14-0.26% 정도가 정신 이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²⁾,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

1) 「모자보건법」제10조의5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.4%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³⁾).

- 참고로 「모자보건법」을 근거로 보건소에서 임신부 등록 시 산전·후 우울증 진단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,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후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 또한 자치구마다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음.
- 서울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해 지난 5년간(2016~2020) 12조 6,108억원을 지원하고, 2021년에 3조 1,2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⁴⁾, 매해 전국 최저의 출산율 및 2020년 기준 0.64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.
- 특히 산모의 정신건강은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아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산모의 추가 출산 결정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⁵⁾ 향후 개정안에 따른 산전·산후우울증을 포함한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.

2) 대한산부인과학회(2019). 산과학(개정 6판). 서울: 군자출판사.; 이재희·이정림·엄지원·김희선(2020),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, 육아정책연구소, pp. 42. 재인용.

3) 이소영·김은정·박종서·변수정·오미애·이상림·이지혜(2018),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·복지 실태조사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p. 176.

4) “제4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(2021~2025) 2021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”(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-6488, 2021,3.15.)

5) 이소영·임지영·홍진효(2017),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p. 14, 153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산전·산후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